

# 2023 꿈의 댄스팀 거점기관 공모 안내

「꿈의 댄스팀」은

춤을 추는 것에서 나아가 자신의 세계(서사)를 담은 춤을 만드는 경험을 통해  
가치관·정체성·미래 역량 발굴 등 아동·청소년이 전인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무용교육을  
지향합니다.

‘몸’이라는 소통 수단을 매개로 나의 세계가 춤으로 표현(연결)되고,  
우리가 만든 춤들이 연결되어 작품(레퍼토리)이 되는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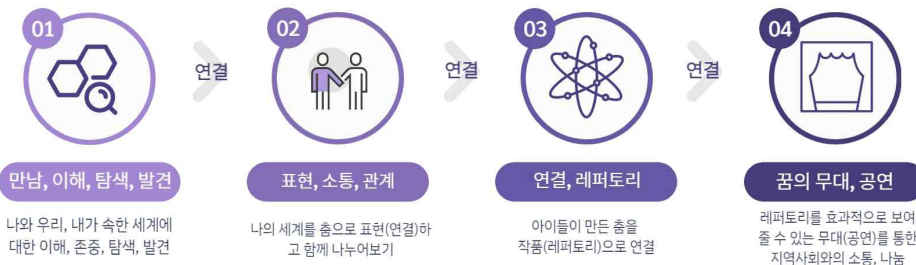
아이들은 단순히 기능적인 학습이 아닌 춤을 만드는 과정에서의 공동창작 과정의 경험과  
공연을 올리는 경험을 통해 협력, 포용 등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사회적 성장을 경험하게  
됩니다.

참여하는 예술가는 매개자로서 아이들의 역량, 잠재력, 특성을 탐색·발견하고  
아이들이 스스로 안무가가 되어 춤을 만드는 과정을 이끄는 교육자로서의 역할을 하며,  
동시에 아이들의 춤을 연결하고 작품을 만드는 창작자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꿈의 댄스팀이 지향하는 교육 철학과 가치가 지역에 자리잡고 확산될 수 있도록 각 지역의  
역량 있는 기관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나의 세계를 담은 춤을 만듭니다

‘몸’이라는 소통 수단을 매개로 나의 세계가 춤으로 표현(연결)되고  
우리가 만든 춤들이 연결되어 작품(레퍼토리)이 되는 과정



무용감독(총괄)을 중심으로 레퍼토리/공연 창작인력(안무, 연출, 음악, 드라마터그 등)과  
교육인력(주강사/보조강사), 행정인력이 협력하여 춤의 현장을 만들어갑니다

# 사업개요

## □ 사업목적

- 자신의 이야기(세계)를 담은 춤을 만드는 작업을 통해 가치관·정체성·미래 역량 발굴 등 아동·청소년의 전인적 성장을 지향하는 <꿈의 댄스팀>의 정체성 구현 및 가치 확산

## □ 추진방향

- <꿈의 댄스팀>의 철학과 가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안정적 교육 운영이 가능한 지역 거점기관 선정 및 사업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컨설팅·워크숍 등 내실화 지원
- 사업의 철학과 가치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공감대 형성을 위한 통합 홍보 및 유관기관 협력을 통한 공유의 장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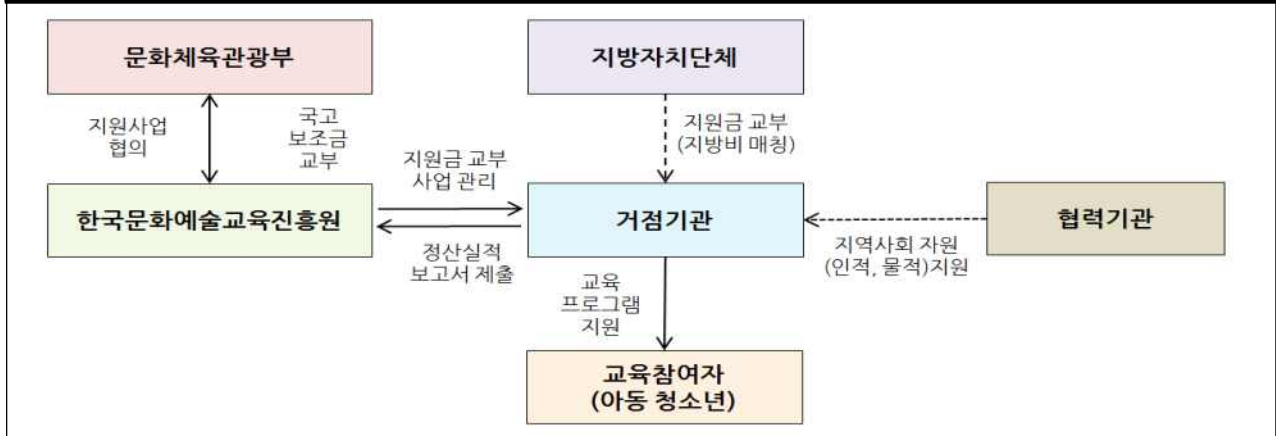
## □ 사업개요

- 사업명: 꿈의 댄스팀 운영사업
- 사업기간: 2023년 2월 ~ 12월
- 사업대상: 취약계층 포함 지역 내 아동·청소년(8~19세)
  - ※ 참여자 모집 시 사회·문화적 취약계층 비율 50% 이상 필수
- 사업내용: 아동·청소년 대상 무용교육 지원
  - (교육장르) 창작무용(한국, 현대, 발레, 실용(스트리트, k-pop 등) 장르 기반)
  - (교육구성) 창작을 기반한 교육 과정, 레퍼토리(작품) 구축 및 발표(공연)
    - ※ 참여자 특성 등 고려하여 기존 레퍼토리를 활용·재구성 가능

## □ 사업 추진체계

참여주체	주요 역할
문화체육관광부	○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총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꿈의 댄스팀 거점기관 선정·관리(현황 점검, 실적/성과 관리 등) - 거점기관 운영 실적/성과 통합 아카이빙, 기획사업 주관을 통한 사업 홍보 등 ○ 꿈의 댄스팀의 정책적 공감대 형성 및 가치 확산을 위한 지원 - 컨설팅, 워크숍/네트워킹, 자원교류 등

<b>지방자치단체</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거점기관의 예산 사용 및 교육 운영에 대한 공공성과 투명성 관리</li> <li>○ 지역 내 꿈의 댄스팀 정착을 위한 공동 협력 및 물적·인적지원</li> </ul>
<b>거점기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거점기관별 사업계획 수립 및 꿈의 댄스팀 교육 실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 자료 및 강사재원 확보, 단원모집 및 보호 등 단원관리, 강사역량강화, 기 자재 확보 등</li> </ul> </li> <li>○ 보조금 집행 및 정산·실적 보고서 작성</li> <li>○ 교육진흥원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연수, 워크숍 등) 참여</li> </ul>
<b>협력기관</b>	○ 지역사회 인적·물적 자원을 연계한 거점기관 운영 지원



## II 공모 세부내용

### □ 공모 개요

- 지원자격 : 문화재단, 문화기반시설 등 공공 법인·단체
  - 본 정책사업을 지역 내 중장기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사업 설계(재정 포함) 및 지역 교육 자원(인적·물적) 확보가 가능한 기관 선정 예정
  - ※ e나라도움을 통한 사업 신청·관리(예치형)가 가능해야 함
- 선정규모 : 20개 이내 기관 선정 (기관별 1억원 정액 지원)
- 지원내용
  - 꿈의 댄스팀 사업 운영 총괄 비용(교육 운영, 레퍼토리 개발, 공연 비용 등)
  - 거점의 안정적 지역 운영 기반 마련 및 확산을 위한 내실화 지원(워크숍, 컨설팅 등)
- 지원방식 : 5년 연속 지원을 통한 꿈의 댄스팀 사업의 지역 정착 및 확산
- 지원구조

구분	신규 거점	성장 거점		지역협력 거점	자립 거점
기간	1년차	2년차	3년차	4-5년차	6년차 이상
지원 규모/내용	1억원(정액)			최대 5천(매칭지원)	간접지원
	자립·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중앙 차원에서의 내실화 지원				

구분	신규 거점	성장 거점	지역협력 거점	자립 거점
자부담 투입비율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100% 국고 지원		50%	100%
			총사업비 내 지방비 50% 의무 편성	교육운영비 전액
목표	정책사업 방향, 가치를 견인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중장기적 사업 설계 및 실행		사업 안정화 및 정착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서 자립* 운영
*예. 지역 예술단 편입, 예술단(무용단) 창단, 후원금 확보 등				
※ 현장 모니터링, 컨설팅 등 사업 관리를 통해 필요 시 연속 지원 여부 재심의를 진행될 수 있음				

## □ 공모 조건

### ○ 중장기(5개년) 계획 및 23년도 실행계획 제출

- <꿈의 댄스팀> 운영 핵심 가치와 방향을 반영하여 본 사업이 지역 내 장기적으로 기반하고 성장할 수 있는 중장기 사업계획 수립
- 중장기 사업계획에 따른 23년도 세부 실행 계획 수립

### ○ 지역 정착 및 확산을 위한 지역 협력체계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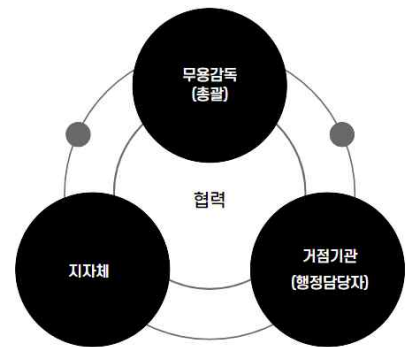
- 지원기관은 소속 지자체와 협력체계를 갖추고, 참여자 모집, 참여인력 구성, 자원 조성 등 관련하여 지역 자원 현황 파악을 통해 본 사업의 안정적인 정착 및 확산을 위한 협력 체계 수립

#### (\*) 지역 협력체계 구축 세부 사항

1. ①무용감독 ②행정담당자 ③지자체가 협력하여 효율적인 사업 운영 및 교육의 질적 제고를 위한 계획 수립 필수
2. 지원기관은 소속 **지자체 협력 의향서를 제출**해야 하며, **지자체 담당자의 면접심사 동석** 필수
3. 지역 내 꿈의 댄스팀 사업의 필요성, 자원 현황을 바탕으로 본 사업을 중장기적으로 지역 내 정착 및 확산시키기 위한 협력체계 구축

※ 본 공모와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지원기관의 부담으로 함 (예: 지원기관의 무용감독 선임 및 협의과정 수반 예산은 본 사업비에 포함되지 않음)

※ 지자체 협력의향서 내 국고지원 종료 후 지자체의 아동·청소년 댄스팀으로 창단(운영) 및 정착을 위한 중장기적 협력 계획(재원 조달 계획 포함)을 제시해야 함



#### <협력 주체별 담당 역할>

- |                  |   |
|------------------|---|
| <b>무용감독 (총괄)</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거점기관 운영사업의 총괄 책임으로서 교육, 창작, 공연 부문의 전문성을 토대로 각 영역의 전문 인력들의 협력과 소통을 유도하는 중추적인 역할 수행</li> <li>· 교육과 창작, 공연인력과 함께 교육 기획·개발과 레퍼토리 창작 등을 주도</li> <li>· 거점기관의 교육철학과 정체성 확립을 위한 참여인력 교육과 관리</li> <li>· 지자체-행정 담당자와의 지속적인 소통 및 지역 다양한 주체와의 네트워킹을 통해 지역 인프라와의 연결과 지역사회의 장기적 지지 확보를 모색</li> </ul> |
|------------------|---|

자격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용분야 안무, 창작의 전문가로 경력 5년 이상 보유한 자</li> <li>· 무용교육과 무용창작을 연결하고 레퍼토리 구축과 공연 기획이 가능한 자</li> </ul>
지자체 담당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꿈의 댄스팀 지역 정착을 위한 운영 협력 및 연차별 예산 지원 노력</li> <li>· 지자체 협약서 제출, 면접심사 및 관계자 회의 등 참석</li> </ul>
행정 담당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기관의 상근인력</li> <li>· 무용감독과 수시로 의견을 교환하며 사업의 장기적 방향 제시, 연간 교육 운영 관리</li> <li>· 보조금 운용 및 관련 문서 작성, 예산집행 및 정산 등 행정업무</li> </ul>

## □ 공모 신청

- 신청방법 : [e나라도움\(http://gosims.go.kr\)](http://gosims.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 **3월 3일(금) / 15:00 까지**
- 제출서류

필수 제출 서류		양식
1) 공모신청서 및 지원기관 정보 ※ 지원기관 직인 날인 필수		제공 양식 활용 붙임2_양식1,2
2) 사업계획서 - 중장기(5개년) 사업계획, 23년도 실행계획 제출 - 행정담당자, 무용감독 자기기술서, 동의서 제출 (무용감독의 경우, 이력서 포함 제출)		제공 양식 활용 붙임2_양식3,6,7
3) 지자체 협력 의향서 ※ 본 사업의 지역 정착 및 확산을 위한 소속 지자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필수		제공 양식 활용 붙임2_양식4
4)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
선택 제출 서류		양식
5) 협력 의향서 ※ 기타 본 사업 운영 관련 협력기관이 있을 경우 제출		제공 양식 활용 붙임2_양식5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출서류별 양식/제출처를 반드시 확인하여 제출</li> <li>- 제출 양식 미 준수 혹은 제출처에 맞지 않게 제출한 경우 미접수 처리 예정</li> <li>- 필수 제출 서류 누락 및 일부만 제출한 경우 미접수 처리 예정</li> <li>- e나라도움을 통한 온라인 접수만 가능(이메일, 방문접수, 우편 등 불가)</li> <li>- 제출서류 내 직인 및 서명이 누락되어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미접수 처리 예정</li> <li>※ 직인의 경우 해당 페이지를 스캔하여 제출해야 하며, 이미지 파일 형태의 직인으로 제출 불가</li> </ul>	

## □ 운영 필수 사항

※ 지원기관은 하단 운영 필수 사항을 참고하여 사업계획 수립 필요



### ○ 참여인력 구성 및 관리 ※ 인력별 자격요건 별첨3 참조

- 꿈의 댄스팀의 인력구성은 무용감독(총괄책임)을 중점으로 레퍼토리/공연 창작 인력(안무, 연출, 음악 등)과 교육인력(주강사/보조강사), 행정인력이 협력하는 구조임
- 지원기관은 인력별 역할/요구 역량 및 자격기준에 준하여 인력 구성 계획을 수립해야하며, 선정 후 구성 계획 및 해당 조건에 맞는 인력을 선발 및 배치하여 관련 서류(이력서, 동의서 등)와 함께 제출해야 함
- 무용감독의 총괄 하에 참여인력 간 상시적 소통 체계 구축을 통한 상시적인 교육 현장 파악 및 점검 추진 (정기/수시 회의, 워크숍)
- 교육의 질적 제고를 위한 참여인력 역량강화(전문가 특강, 내부교육 등) 진행
  - ※ 공연 제작(준비 포함) 관련 비용(무대, 조명, 음향, 의상, 소품 등)은 일반운영비 내 편성
  - ※ 공연 성격 상 대여가 필요한 경우, 임차료 편성 가능

### ○ 단원(아동·청소년) 모집 및 관리

- 지역 내 아동·청소년(8세~19세) 대상으로 모집하되, 모집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그룹별 운영 가능 (예. 초등/중등/고등)
- 지원 예산 규모를 고려, 그룹당 최소 15명 이상 참여자 모집·운영 필수
- 다양한 사회·문화적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이 자연스럽게 참여·유입될 수 있도록 지역의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과의 연계를 통한 협력 모집 등 고려

○ 교육 구성 및 운영 ※ 운영 핵심 가치 및 교육 구성 방향 별첨1,2 참조

(교육장르) 창작무용(발레, 현대, 실용(스트릿, k-pop 등), 한국 등 장르 기반)

(교육구성) 창작을 기반한 교육 과정, 레퍼토리(작품) 구축 및 발표(공연)

- 꿈의 댄스팀 사업 목표, 핵심 가치와 운영 원칙을 담은 계획 수립
- 운영 기간 및 지원 규모를 고려, 그룹당 최소 80시수(회당 2~3시간) 이상 운영 될 수 있도록 회차 구성 필요
- 지원 장르에 적절한 교육 구성 및 회차 계획을 수립하되, 단순 레퍼토리 반복의 교육 구성은 지양해야 함
- 무용 교육 과정 안에서 아이들의 창의성, 역량, 정체성 탐색 등 창작의 자원을 이끌어내기 위한 매체(디지털)나 자료(시각, 미술 등)를 활용할 수는 있으나, 무용으로서의 정체성이 아닌 통합/다원예술에 가까운 교육 구성은 지양함

<참고> 교육 구성(안)

- 춤을 추는 것에서 나아가 나와 우리, 내가 속한 세계의 서사를 담은 춤을 만드는 것
  - 지역의 문화시설과의 연계한 관람·감상 등 체험 기회 제공을 통한 아이들의 경험 다양화, **댄스 리터러시<sup>1)</sup> 함양**
  - 아이들의 역량, 특성에 대한 탐색, **이해를 통해 개인의 서사를 춤과 작품(레퍼토리)에 반영**
  - **창작/공연을 통한 성장 기회 제공, 함께 춤추기를 통한 관계성 확장**

○ 안정적인 교육 환경 마련 (교육/공연 공간 확보 등)

- 단원의 지리적 접근성을 고려, 장르과 운영 규모에 적합한 교육 공간 확보
- 레퍼토리 공연을 위한 지역 내 공연장 확보

- 운영 기간 동안 지속적, 안정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공간 확보 필요
- 단원 수를 고려하여 적정 면적과 층고 확보
- 무용장르 특성을 고려한 전신거울, 음향설비, 댄스플로어, (필요시) 피아노 등 환경 마련
- 기획 방향과 내용, 규모에 적절한 공연장소 사전 확보 필요  
(공연장의 경우 사전 협의(협력의향서 제출)를 통한 사전 확보를 권장함)

○ 사업 홍보 및 가치 확산

- 다양한 소통 채널을 통한 교육 운영 과정과 결과에 대한 지역사회 홍보
  - 사업 추진(참여자 모집 등), 과정\*과 결과와 관련한 현장이 지역사회 내 효과적으로 알려지고 확산될 수 있도록 연중 홍보 추진 필요
  - 언론홍보, 온라인 홍보, 방송연계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발신
    - \* 장르(무용)의 특성을 잘 발신할 수 있는 적절한 매체 활용(숏폼 영상 등)
    - ※ 홍보물 제작 혹은 홍보 시, 본 사업에 대한 주최/주관/사업명 명시 필수

1) 댄스 리터러시는 무용을 통해 함양되는 표현적, 이해적, 상상적, 소통적, 내성적 자질의 총체로서 무용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이다 (서울대학교 대학원 체육교육과, 2015.2.,임수진)

- 레퍼토리(작품) 정기 공연(연 1회 이상) 진행

- 효과적인 성과 발신을 위한 지역 축제·공연과 연계한 추진 고려
- 정책사업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지역 관계자 초청, 참여 독려
  - ※ 공연 추진 시, 사업의 과정과 성과에 대해 공유할 수 있는 결과공유회 연계 진행 고려

○ 레퍼토리 영상 제출

- 기관의 레퍼토리를 효과적으로 소개할 수 있는 **하이라이트 영상 제출('23.9월)**

- ※ 제출한 영상은 교육진흥원 통합 성과공유회('춤의 날(가칭)') 추진 시, 홍보 웹페이지를 통해 대국민 대상 홍보 예정이며, 정확한 제출 시기/방법은 별도 안내 예정

- 정기공연 영상(전체본) 제출('24.1월)

- ※ 제출 자료는 교육진흥원 누리집 <꿈의 댄스팀> 웹페이지를 통해 아카이빙 예정

○ 예산 계획 수립 및 관리 ※ 꿈의 댄스팀 예산 편성 기준 별첨4 참조

- 기관별 1억원 규모에서 제안한 사업 실행에 적절한 '23년도 예산 계획 수립 및 집행·관리
- 지역 정착 및 확산을 위한 중장기적 재원 확보를 위한 지속 관리

○ 정책사업의 내실화 및 홍보를 위한 중앙 추진 행사, 워크숍 등 협조

- ※ '23년도 주요 추진 내용 및 협조사항 p.9 표 참조
- ※ 사업 홍보를 위한 거점 현장 취재, 인터뷰, 자료(사진, 홍보물 등) 요청할 수 있음



### III 심사 및 선정

## 1. 심사·선정 절차 및 방법

※ 세부 일정 변동 가능

구분	일정(안)	내용
자격 검토	접수 마감 ~3월 2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기관의 공모 자격 검토</li> <li>- 필수 제출 서류 미비 여부 검토</li> <li>- e나라도움 자격검증(기획재정부 부정수급자 정보, 국세청 체납정보 등)</li> <li>- 부정수급자 정보 조회*</li> </ul> <p>* e나라도움을 통해 부정수급자로 조회되지는 않으나, 보조금법 위반으로 조사 중에 있거나 위반 내용이 확정되어 처분 대기중 혹은 처분이 완료된 이력이 있는 기관·단체의 경우 심사에서 제외되거나 심사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p> <p>※ 필수 제출 서류 미비한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          ※ e나라도움을 통한 자격검증 결과에 따라 심사에서 제외되거나, 심사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p>
서류 심사	3월 9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격 검토 통과한 지원기관 대상 사업계획 적절성 심사</li> <li>※ 심사 기준에 따라 최종 선정 규모의 1.5~2배수 이내 고득점순으로 인터뷰 대상자 선정</li> <li>※ 인터뷰 대상자 개별연락 및 홈페이지 공고 예정</li> </ul>
결과 발표	3월 13일	
인터뷰 심사	3월 21~22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T발표(사업계획서 요약) 및 면접</li> <li>• <u>지자체 담당자, 지원기관 행정담당자, 무용감독 3인 참석 필수</u></li> <li>※ 지원자 PT발표 10분, 질의응답 10분 총 20분 진행 예정</li> <li>※ PT 제출(인터뷰 대상 기관): ~3. 17.(금)</li> <li>※ 심사 기준에 따라 선정규모(20개 기관) 내 고득점 순 선정</li> <li>※ 서울에서 대면 진행 예정이며, 세부 참여 방법 개별연락 시 안내 예정</li> </ul>
최종 선정 발표	3월 24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개 이내 기관(기관별 1억원 정액 지원)</li> <li>※ 심사를 통해 선정 후 교육진흥원과 보완/협의를 통해 최종 교부 시행 예정</li> </ul>

## 2. 심사 기준

구분	심사항목	심사지표
1	사업 이해도(15%)	• 본 사업의 취지와 목적, 방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계획 설계 여부
2	운영계획 적절성(45%)	• 본 사업 운영 필수사항을 반영한 사업계획 설계 여부 • 사업 및 교육 계획의 적절성, 실현 가능성, 전문성
3	사업 운영 역량(25%)	• 운영체계의 적절성, 지원기관 내 조직 구성 및 역할 분담 체계성
4	예산계획 적절성(15%)	• 예산 분배 계획의 적절성 • 지침 대비 예산 편성의 적절성

## IV 연간 추진 일정 및 선정 후 유의사항

### 1. 연간 주요 추진 일정 및 협조사항

※ 세부 추진 일정/내용 변경 가능하며, 추진 시기 별도 안내/협조 요청 예정

단계	일정	주체	내용 / 협조 사항
공모	~ 3월 3일(금), 15:00 까지	교육 진흥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규 거점기관 공모(20개소)</li> </ul>
사업설명회	2월 13일	교육 진흥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 및 공모 안내, 질의응답 진행 (유튜브 라이브)</li> </ul>
심사 및 선정	3월 2~4주	교육 진흥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류 및 인터뷰(PT) 심사</li> </ul>
선정기관 오리엔테이션	3월 30일(목)	교육 진흥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정기관 대상 사업 운영 지침, 교부신청 관련 안내</li> <li>• 사업계획 보완사항 전달</li> <li>• e나라도움 보조금 집행 교육 시행</li> </ul>
사업계획 보완/협의, 1차 지원금 교부	4월 이내(예정)	교육 진흥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계획 보완 제출 및 검토</li> <li>• 1차 지원금 교부(전체 예산의 50%)</li> </ul>
교육 운영	5월~ 12월 30일	거점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여인력 선발/확정 및 서류 제출(기관→교육진흥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력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이수증 제출 필요</li> </ul> </li> <li>• '아르떼맵' 누리집 기관 및 프로그램 정보 등록</li> <li>• 강사 오리엔테이션(자체), 상시 회의</li> <li>• 참여자 모집, 교육 운영</li> <li>• 추진상황 보고 및 2차 교부신청(8월)</li> </ul>
컨설팅 모니터링 워크숍 보조금 상시점검	5월~12월	교육 진흥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전 조사(5~8월): 현장 조사 및 인터뷰 시행</li> <li>• 거점별 현장 컨설팅 시행(9~1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컨설팅 세부 진행 방식 별도 안내 예정</li> </ul> </li> <li>• 통합워크숍 시행(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컨설팅 주요 결과 공유</li> <li>- 1기 현장 사례 공유 (자료 협조요청 예정)</li> </ul> </li> <li>• 보조금 집행 상시점검(회계법인, 교육진흥원)</li> <li>• 추진상황 검토 및 2차 지원금 교부(9월)</li> </ul>

단계	일정	주체	내용 / 협조 사항
대국민 참여형 성과공유회 '춤의 날(가칭)'	11월(예정)	교육 진흥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추진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형태의 통합성과공유회 기획으로 &lt;꿈의 댄스팀&gt; 사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통합적인 지역 성과 발신 및 본 사업에 대한 인식 저변을 확대하기 위함</li> </ul> </li> <li>추진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 거점별 레퍼토리(하이라이트) 영상을 온라인 웹페이지에 업로드하여 대국민 홍보 및 공감투표 진행</li> <li>- 가장 많은 공감을 얻은 작품 4개를 '올해의 작품'으로 선정하여 성과공유회(춤의 날(가칭)) 발표(쇼케이스) 진행</li> </ul> </li> </ul>
		거점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통) 거점별 레퍼토리를 효과적으로 소개할 수 있는 하이라이트 영상 제출(9월)</li> <li>(선정기관) 쇼케이스 준비(제작회의 등 참여)(9~10월)</li> <li>(선정기관) 쇼케이스 진행(11월)</li> </ul> <p>※ 쇼케이스 진행 비용은 교육진흥원에서 부담 예정이나, 참가를 위한 경비는 사업비 내 편성 필요</p>
정기공연	11월 (예정)	거점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레퍼토리 공연 홍보 및 공연 시행</li> </ul> <p>※ 거점별 공연 통합 홍보를 위해 관련 자료(공연포스터, 사진자료 등) 요청이 있을 수 있음</p> <p>※ 효과적인 성과 발신을 위한 지역 축제·공연과 연계한 추진 고려</p> <p>※ 정책사업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지역 관계자 초청, 참여 독려</p>
홍보 가치확산	연중	거점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온·오프라인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신문·방송 매체 홍보</li> <li>- 온라인 채널(sns)을 통한 현장 발신(카드뉴스, 슷폼 등)</li> <li>- 지역 커뮤니티 연계한 캠페인성 이벤트 진행 등</li> <li>- 지역 사회 사업의 가치 확산을 위한 홍보 진행</li> </ul> </li> </ul>
결과보고/정산	2024. 1월	거점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결과보고 및 정산(~2024.1월)</li> <li>공연 영상(전체본) 제출</li> </ul>

## 2. 공모 선정 후 유의사항

### ○ 연 단위 사업 실적 보고 및 사업계획 제출

- 신규 거점으로 선정된 기관은 국고가 지원되는 1~5년차까지는 연단위로 사업 실적보고 및 연간 사업계획을 제출하여 지원금을 교부받음(1,2차 분할교부)
  - ※ 현장 모니터링, 컨설팅 등 사업 관리를 통해 필요 시 연속 지원 여부 재심의를 진행될 수 있음

### ○ 교육진흥원 사업 지침에 근거한 연간 사업 운영 협조

- 거점기관은 교육진흥원 사업 운영 지침에 근거한 연간 사업 운영에 협조하여야 함
- 사업의 내실화 및 정책사업 홍보/확산을 위해 중앙에서 주관하는 컨설팅/모니터링, 워크숍, 조사, 행사 등에 협조하여야 함
  - ※ 관련 지침 및 협조 세부사항 선정기관 오리엔테이션 시 안내 예정

### ○ 심사를 통해 제안된 보완 사항 반영한 사업계획서 보완 제출

- 심사를 통해 세부 사업계획 보완이 필요한 기관의 경우, 해당 내용에 따라 예산 내역 등 조정하여 교부신청 해야 함
- 선정 후 참여인력 선발을 통한 인력 확정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함
  - (\*) 이력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이수증 등
    - ※ 꿈의 댄스팀 참여인력 자격요건에 맞는 인력으로 선발 필요
- 교부 결정된 사업 내용 및 예산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교육진흥원의 승인을 얻어야 함

### ○ 사업 수행 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관련 서약서 제출 및 교육 이수 의무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14조의2,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성희롱·성폭력 방지 의무 이행 및 관련 서약서를 교육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서약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선정 후 양식 배포 예정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3조의2,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이행 및 이수 확인서를 교육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함 ※ 선정 후 양식 배포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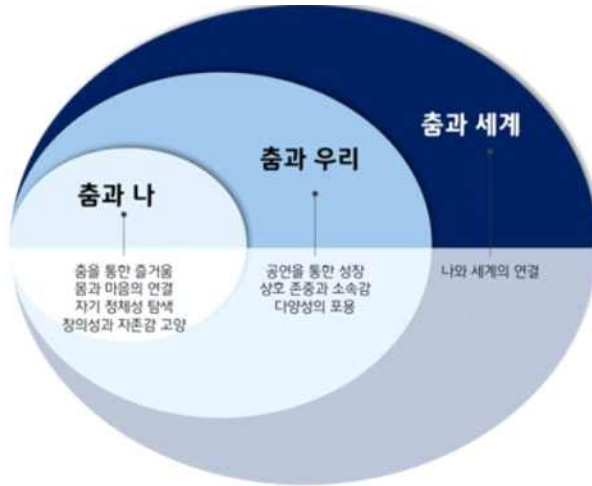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한 사업비 집행·관리·정산
  - 교부결정 시 교육진흥원에서 통보한 목·세목의 용도 및 집행방법에 따라 보조금을 사용하여야 하며, 모든 집행은 e나라도움을 통해 이루어져야 함
  - 보조금 집행은 인건비를 제외한 모든 사항은 e나라도움 전용 신용카드 사용 혹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통한 업체와의 거래만 가능
  - 해당 사업의 경우, 온라인 회계검증을 통한 집행의 적절성 검토 및 정산내역 검토가 이루어질 예정이며 회계검증 관련 협조(회계법인 지정, 수수료 납부) 필요
  
- 청렴 및 보안서약서, 인권경영 이행 서약서 제출
  - 교육진흥원 간접보조금관리지침에 따라 보조사업 과정 전반에 있어 인권을 존중하고 청렴하고 공정하게 사업을 운영하여야 하며, 관련 서약서를 제출해야 함
    - ※ 선정 후 양식 배포 예정
  
- 부정수급 근절 서약서 제출
  - 교육진흥원 간접보조금 관리지침에 따라 간접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서약서 제출해야 함
    - ※ 선정 후 양식 배포 예정
  
- 저작권 관련
  - 본 사업에서 발생한 산출물(사진, 영상, 프로그램 등) 관련 저작재산권(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저작물작성권)은 「저작권법」 제24조의2에 따라 교육진흥원에게 양도되며, 필요한 경우 일부 저작재산권의 권리권한을 교육진흥원과 협의할 수 있음
  - 향후 공모에 선정된 기관에서 제출한 결과물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해 대국민 대상 온라인 서비스될 수 있음
  - 교육진흥원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라이선스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을 적용하며, 필요에 따라 다른 유형을 적용할 수 있음
  - 거점기관은 제출 결과물의 저작권 관련 협의에 필요한 권리 및 권한을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제출 결과물의 내용이 제3자의 저작권, 인격권, 상표권, 초상권을 비롯한 일체의 사적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것과 공모 선정 전, 제출 결과물의 저작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했다는 사실이 없고, 제출 결과물의 이용허락을 위한 설정 계약의 유무를 확인하고 보증하여야 함

- 제출 결과물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제출 결과물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등과 같은 법적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공모신청 기관이 자신의 비용과 노력으로 해당 분쟁을 해결하여야 하며, 교육진흥원은 전적으로 면책시켜야 함

○ 문화예술교육 자원지도(아르떼 맵) 정보 등록 관련

- 교육진흥원에서는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대국민적 인식 확산 및 접근성 확대를 위해 문화예술교육 단체 및 프로그램 정보를 구축하여 대국민 대상 서비스 기반을 마련하고 있음
- 해당 정보 구축을 위해 거점기관은 선정 후 ‘문화예술교육 자원지도(이하 아르떼 맵)’ 누리집에 기관과 프로그램 정보를 직접 등록하여야 함
  - 사업 교부 후 1개월 이내 기관 계정 신청 및 기관 정보 등록
  - 교육 프로그램 실행 1개월 전 교육 프로그램 정보 등록
- ※ 상세 내용(계정 신청, 정보등록·관리, 탈퇴 등)은 교부 시 매뉴얼 배포 예정
- 거점기관이 등록하는 정보와 이미지는 저작권, 인격권, 상표권, 초상권을 비롯한 일체의 제3자 사적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것이어야 함. 만약 기관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기관 대표로부터 적법한 권한을 위임받지 않았거나, 허위 등록 사실이 확인될 경우, 교육진흥원은 사전 통보 없이 해당 정보를 삭제할 수 있고,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도록 조치할 수 있음

**[첨부1] 꿈의 댄스팀 운영 핵심 가치 및 거점기관 역할**



**미션**  
**춤을 통한 연결(몸과 마음, 나와 세계를 연결)**

단순히 춤추기라는 신체적 활동을 넘어서 창의적 문제해결과 협동이 요구되는 창작과 퍼포먼스, 예술에 대한 감상과 반응, 나 자신을 넘어 타인과 세상과 연결되는 소속감과 연대감까지를 포함. 이는 '전인교육' 실현에 이상적인 학습으로서의 춤이라는 가설을 지지하며, 인간과 환경 등의 관계성을 중시하고 그 안에서 조화(balance)와 포괄성(inclusiveness)을 추구함

- 교육원칙**
- <춤과 나>**
1. 춤을 통한 즐거움, 정체성 탐색
  2. 춤을 통한 몸과 마음의 연결
  3. 창의적 표현을 통한 자존감 고양
- <춤과 우리>**
5. 모두가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창작과 안무
  6. 함께 춤추기를 통한 상호 존중과 이해
  7. 공연을 통한 상호 학습과 성장, 지역 사회 소통
- <춤과 세계>**
8. 춤을 통한 나와 세계의 연결

- 행정원칙**
1.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예술적인 사회안전망 구축
  2. 모두를 위한 예술교육의 확장과 창의적 격차 줄이기
  3. 예술교육현장의 개별성과 특수성의 인식
  4. 행정-교육-예술 간의 균형과 공존
  5. 지역의 특성을 살린 협력체계 구축

**거점기관 역할**

- 교육운영**
- 교육대상 연구, 프로그램 설계 및 교육방법 연구
  - 수준 높은 강사진의 확보와 지속적인 R&D 견인
  - 통합적인 리더십으로 교육방법과 레퍼토리·공연 기획·구축
  - 교육, 창작, 공연으로 연결되는 댄스팀 정체성 구현
  - 아동·청소년 교육활동 관리

- 행정운영**
- 교육진흥원-거점 협력망 역할 및 전문성 확보
  - 교육·공연 공간 확보
  - 참여자 및 보호자 관리
  - 강사진 지원 및 관리
  - 공연 기획 및 진행
  - 지역 내 아동·청소년 유관 기관과의 협력
  - 꿈의 댄스팀의 지역 정착 및 확산을 위한 사업의 차별성 가시화 및 홍보

- 지속가능성 확보**
- 정체성 확립 및 사회적 가치 인식 확대
  - 꿈의 댄스팀 자원(레퍼토리, 인적·예술적 자원)의 확보와 확장
  - 지역 내 주체적인 협력망 개발 및 다각화
  - 열린 소통 구조와 협력체계 확보
  - 자체 평가 및 환류체계 확립
  - 지역사회와의 장기적 지지 유도

## [첨부2] 꿈의 댄스팀 교육 구성 방향

### 1. 교육목표 설정: 춤을 통한 아동·청소년의 전인적 성장을 목표로 설정합니다.

- 꿈의 댄스팀은 아동·청소년이 즐겁게 춤추며 주체적으로 창작활동을 해나가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춤'과 '몸'을 통해 자신의 이야기(세계)를 표현하고 교감해나가며 행복한 개인으로 성장해나가는 것이 꿈의 댄스팀이 꿈꾸는 미래입니다.
- 단순히 기능적인 학습이 아닌 춤을 만드는 과정에서 **공동창작 과정을 경험**하고 **공연을 올리는 경험**을 통해 협력, 포용 등 공동체 의식 함양 및 사회적 성장을 도모합니다.

### 2. 교육구성 기본 방침: 교육프로그램은 거점기관별로 보유하고 있는 창의적 방법론을 적용하여 개발하되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구성합니다.

- 교육대상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꿈의 댄스팀 교육/행정 운영 원칙을 반영한 교육 경험과 환경을 구성합니다.
- 교육목표와 교육내용, 교육방법이 연계성을 지닐 수 있도록 체계적·조직적으로 구성합니다.
- 최소 차시·시수 기준을 참고하여 설정한 교육목표 성취를 위해 요구되는 교육 차시와 시수를 편성합니다.
- 교육대상 정원은 교육내용과 방법, 레퍼토리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선정합니다. 최소 15명 이상의 아동·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하며, 동시에 정원에 비례하는 공간과 강사 확보를 고려해야 합니다.
- 다양한 연령대의 학습자를 모집하거나 특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할 경우, 정원 축소 및 분반 운영이 가능합니다. 단, 동일 대상/프로그램을 반복하여 운영하는 방식은 불가합니다.
- 2년차 이상의 경우, 참여 아동·청소년의 동기부여와 심화학습을 위하여 신규참여자와 지속참여자로 대상을 구분하여 수준별 분반 수업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꿈의 댄스팀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공연창작과 리허설 등을 포함하여 교육을 구성합니다.
- 무용단원으로서 요구되는 예술적 표현력과 감수성 증진을 위하여 정규교육과정 외에 공연감상, 현장탐방 등 **특별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단, 특별교육이 단순 오락형 관람·감상에서 그치지 않고 교육 과정과 연계하여 아이들이 경험을 통해 댄스 리더러시를 함양할 수 있도록 연계가 필요합니다.

### 3. 교육 실행 및 관리: 거점기관은 효과적인 학습자 변화와 성취를 유도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조직적·체계적으로 설계하고 관리합니다.

- 거점기관만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교육철학과 교육방법 연구를 지속하고, 효과적인 운영전략 수립과 실천, 평가를 통한 환류가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교수학습지도안·교구·매체 등을 개발하고, 학습을 조력·촉매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합니다.
- 참여자의 반응과 변화를 관찰할 수 있는 평가기준과 도구를 마련하고 이를 활용하여 참여 아동·청소년의 요구를 반영하고 성과를 관리합니다.
- 교육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수정·보완을 반영하는 과정을 통해 교육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는 노력을 기울입니다.
- 거점기관은 사업계획서에 제시한 목표/내용/방법/일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의무사항을 준수합니다.
- 참여인력과 단원 모두가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와 환경을 조성하도록 합니다.

### 4. 공연창작 및 레퍼토리 구축·관리: 거점기관과 지역이 보유한 자원과 역량을 충분히 활용하여 레퍼토리를 창작·확보하고 구축하되 아래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 공연창작 및 레퍼토리 구축은 꿈의 댄스팀의 주요한 정체성의 한 축이자, 아동·청소년의 다면적 성장의 기회로서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공연은 전문성이 고도로 필요한 활동이지만, 모든 과정이 공연을 위한 부수적인 것으로 매몰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와 계획이 필요합니다.
- 공연은 창의적 발현의 기회로서 아동·청소년의 개별성이 반영되고 드러나야 하며, 테크닉이나 안무 자체에 봉사하는 몸이나 인력이 아니라, 자신의 몸을 인식하고,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창의적 학습의 과정으로서 인식되고 진행될 필요 있습니다.
- 무용단이라는 집합체로서의 성격이 꿈의 댄스팀의 특성인 만큼, 공연의 준비와 활동을 통해서 '함께'와 '같이'의 의미를 깨닫고 소속감을 느끼는 한편, 어울림 속에서 자신과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공존의 의미를 체화해보는 기회로 발전되어야 합니다.



◆ 꿈의 댄스팀 레퍼토리 구축 및 관리 가이드라인

※ 교수법, 레퍼토리 확보 등 관련 전문기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자원교류 가능

영역	실행방향
<p>학습자 중심, 과정 중심의 창작과 공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순한 움직임 따라하기에서 벗어나 매 수업이 상상력과 창의력을 자극하고, 자신만의 움직임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기획되고 운영되어야 함</li> <li>• 교육자는 움직임을 묘사하고 견인하는 언어를 정교하게 개발하여야 하며, 움직임을 촉발시킬 수 있는 다양한 감각을 활용하고 자극할 필요가 있음 (예: 문학, 미디어, 영상, 음악, 연극, 글쓰기 등)</li> </ul>
<p>모든 아이들을 위한 안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체, 재능, 숙련도 등으로 아이들이 위계화되거나 차별받지 않고, 신체적 특징이나 질병, 장애 등으로 소외되지 않도록 모든 아이들을 포용할 수 있는 안무적 소재를 개발하고, 방법론을 구축해 나가야 함</li> <li>• 평등하고 고른 역할 분담을 통해 모든 참여자가 소외되지 않고 자신의 역할을 가질 수 있도록 안배하고 필요 시 개별적으로 지도함</li> </ul>
<p>교육과 창작의 연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연을 위한 기술습득, 소진하는 반복연습에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헌신하지 않고 창작과 공연의 과정이 수업 과정과 연계되어 있으면서도 교육적으로 의미 있어야 함</li> <li>• 안무의 소재는 아이들의 관점, 관심사, 상상 등 눈높이에 맞는 주제로서, 아이들의 목소리와 상상이 반영되어야 함</li> </ul>
<p>지지하는 전문가그룹의 활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음악가, 드라마터그, 연출가, 미디어, 작가 등 <b>창작을 위한 전문가</b>를 섭외하고, 아동 청소년의 창의적 학습의 기회로서의 공연을 지지하고 조력할 전문가를 확보하고, 같은 방향성과 철학 안에서 창작을 구체화할 수 있음</li> </ul>
<p>고유한 예술적 개별성의 발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지역사회의 문화적 자원, 예술적 유산이나 색채, 예술감독의 미학적 판단이 드러나는 꿈의 댄스팀의 고유성을 레퍼토리 구축에서 발휘함</b></li> <li>• 지역 예술자원이나 예술기관, 예술가와 연계하여 문학, 음악, 미디어, 미술 등 다양한 장르의 예술과 연계한 창작을 독려함</li> <li>• 아동을 위한 예술성의 하향평준화가 아닌, 아동 청소년의 특수성을 민감하게 반영한 예술적인 탁월함, 참신함을 지향함</li> </ul>
<p>공동 창작과정의 지지와 민주적인 의사결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어진 내용과 역할을 전달하고 수행하는 수직적인 구조에서 벗어나 창작의 과정 전반에 관한 내용을 강사진, 참여 예술가, 참여자들과 공유하고, 상호소통과 피드백을 통하여 논의·점검하며 발전시켜 나감</li> </ul>
<p>성장의 기회로서의 공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연의 참여 과정이 교육적이고 창의적 학습의 기회가 제시되어야 함</li> </ul>

**[첨부3] 꿈의 댄스팀 참여인력 역할/요구역량 및 자격기준**

구분	역할 및 요구역량
창작인력	· 꿈의 댄스팀의 지향점과 교육 원칙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레퍼토리 창작과 관련된 업무 담당 (안무, 연출, 음악 등)
	<b>자격기준</b>
교육인력 (주강사)	·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관련분야 3년 이상의 현장경험을 보유한 자
	· 꿈의 댄스팀의 지향점과 교육 원칙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연구·개발하고 운영하는 역할
교육인력 (주강사)	· 교육과 창작을 연결하여 참여자가 학습의 연장선으로서의 공연을 준비하고 교육-창작-공연까지의 연계성을 지닐 수 있도록 발전시키는 역할
	<b>자격기준</b>
교육인력 (보조강사)	· 무용 관련분야 학위(학사이상)를 취득하고, 창작·공연 분야 혹은 문화예술교육 분야에서 3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자
	· 주강사와 협력하여 교육프로그램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고 학생 중심의 수업 운영과 학습을 조력하는 역할
코디 네이터	<b>자격기준</b>
	· 무용 및 관련분야 전공자(학부생 및 졸업 예정자 포함) 혹은 예술분야나 문화예술교육 분야에서 1년 이상의 경력
코디 네이터	· 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참여자의 학습을 조력할 수 있는 전문성을 보유한 경우 (예: 수어통역사, 특수교사 외)
	· 사업 운영 관련 행정 보조업무(현장 조율, 관리 등) 수행
코디 네이터	· 효율적인 교육 운영을 위한 공간 및 교육자재 관리 등 교육 준비 지원
	· 단원과 학부모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한 공감대 형성 및 협조 유도
코디 네이터	· 단원의 출결과 안전관리, 교육 및 회의 일정 관리 등
	<b>자격기준</b>
코디 네이터	· 문서작성 및 의사소통, 관리 및 매개 역량을 보유한 자
	· 행정·기획 관련 혹은 교육 정책사업 관리 유경험자, 사회복지·아동청소년 관련학과 전공자 우선 고려

## [첨부4] 꿈의 댄스팀 예산 편성 기준

### < 예산 편성 유의 사항 >

- ◆ 항목별 적정 비율로 예산 편성하되, 일부 과다 책정된 항목의 경우 심사를 통해 조정될 수 있음
- ◆ **사업추진비 : 총 지원금의 10% 초과하여 편성 불가**
- ◆ 지원 기관·단체의 **일상적인 운영 경비 책정 불가**
  - 상근직원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공과금, 전화요금 등
- ◆ 신청 예산에 맞는 회계검사수수료 책정 필수 (일반수용비)
- ◆ 참여인력의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에 대한 예산 책정 필수(운영비-일반수용비)

세목	항목	편성기준								
상용임금	코디네이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 5일: 월 202만원 이내/1인/1일(8시간)/세금 및 4대 보험 개인부담금 포함</li> <li>- 주 4일: 월 162만원 이내/1인/1일(8시간)/세금 및 4대 보험 개인부담금 포함</li> <li>※ 세금을 제외하고 본 사업비로 지원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202만원(주 5일 기준)이며 기준일 근무 초과 시 자체예산 또는 자부담 예산을 활용하여 인건비, 세금 및 4대 보험금 등 추가 지급할 수 있음 (시간 외 근무 수당 등)</li> <li>※ 단원 수에 따라 코디네이터 추가 채용 가능</li> </ul>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단원 수</td> <td>70명 이하</td> <td>70명 초과 100명 이하</td> <td>100명 초과</td> </tr> <tr> <td>코디네이터 수</td> <td>1명</td> <td>2명</td> <td>3명</td> </tr>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코디네이터 인건비는 감사비와 이중 지원 불가</li> <li>※ 운영기관 내부의 기존 상근직원일 경우 인건비 지급은 불가하며, 별도의 사업전담인력을 해당 사업기간 내에 채용할 시에만 인건비 지급 가능</li> <li>※ 코디네이터의 4대 보험 기관부담금의 경우 반드시 책정</li> <li>※ 4대 보험 기관부담금 요율은 기관마다 상이함으로 지역별 확인 후 지급 (국민연금: 1개월 이상 근로자 / 건강보험: 1개월 60시간 이상 근로자 / 고용산재보험: 1주 15시간 이상 1개월 60시간 이상 근로자)</li> <li>※ 1년 이상 근무 시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제8조 제1항)'에 따라 퇴직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함</li> </ul>	단원 수	70명 이하	70명 초과 100명 이하	100명 초과	코디네이터 수	1명	2명	3명
		단원 수	70명 이하	70명 초과 100명 이하	100명 초과					
코디네이터 수	1명	2명	3명							
일용임금	단기용역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단기용역비(일용인력)</b></li> <li>- 4대보험 가입기준에 의거하여 근로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인 자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상시근로자로 적용되므로 동일한 일용인력을 연속 또는 인접하여 1개월 이상 계속 활용 불가 (동일인인 경우 30일 미만으로만 활용 가능)</li> <li>- 공연, 행사 등 단기적으로 활용하는 인력</li> <li>- <b>기준일금액 77,000원/1인/1일(8시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3년 최저임금 9,620원 적용(9,620원×8시간=76,960원)</li> <li>※ 연장, 야간(숙박), 휴일근로로 활용될 경우 운영기관별 내규에 따른 가산임금 추가 지급 필요 (예산편성 시 초과근로에 대한 부분은 최대한 자제하여 편성)</li> <li>※ 일용직 활용비 지급시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동의서'의 수령 및 정산 시 해당동의서 필첨</li> </ul> </li> <li>- <b>기관부담금: 2.153%(2022년 기준) * 참고 본인부담금: 0.9%</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 단위 미만 절사하여 적용 / 기관부담금 '22년 기준 예상률로 추후 변경 가능</li> <li>※ '23년 4대보험 요율이 기관마다 상이 할 수 있음. 지역별 확인 후 필요시 책정 가능함</li> <li>※ 보조인력비는 국공립기관 및 단체, 법인 등의 내부 상근직원은 적용 불가</li> </ul> </li> <li>- <b>주휴일 및 주휴수당</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휴일 지급 기준: 일하기로 정한 시간(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을 상회하는 매 1주에 대하여 1일의 주휴가 발생함(주휴를 포함한 인건비 및 기관부담금 확보 필요)</li> <li>· 계약일을 기준으로 매 7일을 한 주로 봄</li> </ul> </li> </ul>								

세목	항목	편성기준										
		<p>예) 계약기간 초일이 2023년 1월 2일, 말일이 2023년 1월 25일인 경우, 2일~8일, 9일~15일, 16일~22일을 각 한 주로 봄 (23일~25일이 속한 마지막 주의 경우 계약기간이 한 주(7일)를 채우지 못하므로 주휴가 발생하지 않음)</p> <p>· 주휴수당 계산 방법: 77,000 × 1주 소정근로시간 ÷ 40</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 style="text-align: center;"><b>예시</b></p> <p>1. '23년 1월 2일부터 '23년 1월 25일까지 월, 화, 수, 목, 금요일에 하루 8시간씩 근로하는 근로자 A의 주휴  - A의 발생 주휴일수: 2일부터 8일까지의 기간 중 1일 + 9일부터 15일까지의 기간 중 1일 + 16일부터 22일까지의 기간 중 1일 = 계약기간 중 총 3일의 주휴일이 발생  - A의 주휴수당 일액: 77,000×(5×8)÷40 = 77,000원 / A의 총 주휴수당액: 77,000×3 = 231,000원</p> <p>2. '23년 1월 2일부터 2023년 1월 25일까지 월, 수, 금요일에 하루 8시간씩 근로하는 근로자 B의 주휴  - B의 발생 주휴일수: A와 동일  - B의 주휴수당 일액: 77,000×(3×8)÷40 = 46,200원 / B의 총 주휴수당액: 46,200×3 = 138,600원</p> <p>3. '23년 1월 2일부터 2023년 1월 25일까지 화요일에만 하루 8시간씩 근로하는 근로자 C의 주휴  - 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에 미치지 못하므로 주휴 미발생</p> <p>4. '23년 1월 2일부터 '23년 1월 25일까지 월, 화, 수, 목, 금요일에 하루 8시간씩 근로를 원칙으로 하나, 11, 12일은 휴무일로 하는 근로자 D의 주휴  - D의 발생 주휴일수: A, B와 동일  - D의 1주차 주휴수당 일액: 77,000×(5×8)÷40 = 77,000원  - D의 2주차 주휴수당 일액: 77,000×(3×8)÷40 = 46,200원  - D의 3주차 주휴수당 일액: 77,000×(5×8)÷40 = 77,000원  - D의 총 주휴수당액: (77,000 + 46,200 + 77,000) = 200,200원</p> </div>										
일반 수용비	인건비	<p>○ 무용감독, 창작인력(안무, 연출, 음악 등)  - 학술연구용역 연구원 단가 기준 적용</p> <p>○ 교육인력(연구원, 강사, 보조강사)  - 교육개발비: 학술연구용역 연구원 단가 기준 적용  - 교육진행비: (강사) 43,000원/시간 (보조강사) 22,000원/시간  ※ 강사의 경우 교육개발에 참여 필수이며, 교육 기간과 중복되지 않는 기간에 한하여 교육개발비 책정 가능  예. 2,600,000원×2개월(5~6월)×0.5 + 43,000원×80시수(7~12월)=6,040,000원  ※ 수업진행비는 1일, 1회 최대 4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추가 시간 책정 시 사업담당자와 사전 협의 필요)  ※ 공연 차시를 포함하여 교육진행비 책정</p> <p>&lt;참고&gt; '23년도 학술연구용역 연구원 단가 (만단위 이하 절사)</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20%;">구분</th> <th style="width: 30%;">월 임금(최대)</th> <th style="width: 50%;">비고</th> </tr> </thead> <tbody> <tr> <td>연구원</td> <td>월 2,600,000원</td> <td>※ 해당 기준액을 최대로, 개인별 참여하는 프로젝트 수에 따라 투입률 조정 가능  예. (무용감독) 260만원×8개월×70%</td> </tr> </tbody> </table> <p>&lt;유의사항&gt;  - 필요에 따라 역할 겸임은 가능하나, 인건비 중복 책정 불가  예) 무용감독 안무/연출 겸직 가능  - 특강강사, 객원무용수 등 단기로 활용하는 인력의 경우 전문가활용비에 편성</p>	구분	월 임금(최대)	비고	연구원	월 2,600,000원	※ 해당 기준액을 최대로, 개인별 참여하는 프로젝트 수에 따라 투입률 조정 가능 예. (무용감독) 260만원×8개월×70%				
구분	월 임금(최대)	비고										
연구원	월 2,600,000원	※ 해당 기준액을 최대로, 개인별 참여하는 프로젝트 수에 따라 투입률 조정 가능 예. (무용감독) 260만원×8개월×70%										
일반 수용비	전문가 활용비	<p>○ 강의료(행사 특강, 워크숍, 전문가 강연 등) ※ 내부 참여인력 활용 불가  ※ 공연에 객원무용수 활용할 경우, 본 강의료 기준 적용하여 지급  ※ 정규 교육 과정에서 특강을 진행할 경우, 총 회차 대비 최대 10% 이내 활용 가능  * 예) 총 20회차 프로그램의 경우, 최대 2회까지 활용 가능</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5%;">등급</th> <th style="width: 25%;">지급금액/기준</th> <th style="width: 60%;">비고</th> </tr> </thead> <tbody> <tr> <td>1등급</td> <td>250,000원/1시간</td> <td rowspan="3">.2시간: 1시간 기준의 200% 지급 .2시간 초과 시 매 시간마다 1시간 기준의 50%만 적용</td> </tr> <tr> <td>2등급</td> <td>150,000원/1시간</td> </tr> <tr> <td>3등급</td> <td>100,000원/1시간</td> </tr> </tbody> </table> <p>※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는 경우, 대면 회의와 동일 기준 적용</p>	등급	지급금액/기준	비고	1등급	250,000원/1시간	.2시간: 1시간 기준의 200% 지급 .2시간 초과 시 매 시간마다 1시간 기준의 50%만 적용	2등급	150,000원/1시간	3등급	100,000원/1시간
등급	지급금액/기준	비고										
1등급	250,000원/1시간	.2시간: 1시간 기준의 200% 지급 .2시간 초과 시 매 시간마다 1시간 기준의 50%만 적용										
2등급	150,000원/1시간											
3등급	100,000원/1시간											

세목	항목	편성기준														
		<p>※ 방송인, 저명인사 등 특별한 강의로 책정은 교육진흥원과 사전 협의하여 섭외 단가 책정 가능</p> <p>※ 동일인이 여러 일에 걸쳐 강의하는 경우, 각 일로 계산</p> <p>※ 강의로에는 강의 원고료 등이 포함되어 있음. 다만, 자료집 제작을 위해 <b>별도의 원고</b>(강의 자료와 자료집에 수록된 자료가 상이한 경우)를 요청한 경우 '원고료 지급 기준'에 따라 강의로 외 별도로 원고료 지급 가능</p> <p>※ 예술 공연의 경우, 교육진흥원의 승인을 얻어 별도 시중가를 적용할 수 있음</p> <p>※ 강연자는 별도의 보조강연자를 둘 수 있으며, 보조강연자의 강의료는 해당 등급의 50% 적용</p>														
		<p>○ <b>회의참여수당(자문회의만 해당)</b> ※ 내부 참여인력 활용 불가</p> <table border="1"> <thead> <tr> <th>등급</th> <th>지급금액/기준</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1등급</td> <td>200,000원/2시간</td> <td>· 1시간: 2시간 기준의 50% 지급</td> </tr> <tr> <td>2등급</td> <td>200,000원/2시간</td> <td>· 2시간 초과~5시간 미만: 2시간 기준의 150% 지급</td> </tr> <tr> <td>3등급</td> <td>100,000원/2시간</td> <td>· 5시간 이상: 2시간 기준의 200% 지급</td> </tr> </tbody> </table> <p>※ 비대면 영상 회의를 진행하는 경우, 대면 회의와 동일한 기준 적용</p> <p>※ 서면자문의 경우, 시간과 상관없이 1회당 100,000원 지급</p>	등급	지급금액/기준	비고	1등급	200,000원/2시간	· 1시간: 2시간 기준의 50% 지급	2등급	200,000원/2시간	· 2시간 초과~5시간 미만: 2시간 기준의 150% 지급	3등급	100,000원/2시간	· 5시간 이상: 2시간 기준의 200% 지급		
등급	지급금액/기준	비고														
1등급	200,000원/2시간	· 1시간: 2시간 기준의 50% 지급														
2등급	200,000원/2시간	· 2시간 초과~5시간 미만: 2시간 기준의 150% 지급														
3등급	100,000원/2시간	· 5시간 이상: 2시간 기준의 200% 지급														
		<p>○ <b>심사 및 심의 사례비</b> ※ 내부 참여인력 활용 불가 (단, 무용감독 지급 가능)</p>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구분기준</th> <th rowspan="2">지급금액/기준</th> <th rowspan="2">비고</th> </tr> <tr> <th>A: 건수</th> <th>B: 난이도</th> </tr> </thead> <tbody> <tr> <td>50건 이상</td> <td>상대적으로 높은 난이도의 평가</td> <td>300,000원/2시간 *전문가 등급 무관</td> <td>· 2시간 초과~5시간 미만: 2시간 기준의 150% 지급</td> </tr> <tr> <td>50건 이하</td> <td>상대적으로 낮은 난이도의 평가</td> <td>200,000원/2시간 *전문가 등급 무관</td> <td>· 5시간 이상: 2시간 기준의 200% 지급</td> </tr> </tbody> </table> <p>※ 기준 A와 B 중 택1 하여 사례비 지급. 동일 심사·심의에 참여하는 심사·심의위원 전원 동일 기준 적용</p> <p>※ 건수는 해당 심사·심의의 총 건수가 아닌 심사·심의위원 1인당 심사·심의해야 하는 건수를 의미함</p> <p>※ 비대면 심사·심의, 현장심사·심의, 방문 심사·심의 모두 동일한 기준 적용</p> <p>※ 전문가 교통비는 국내여비로 책정·활용, 예산 범위 내에서 정액(강사교통비 기준) 및 실비 지급</p> <p>※ 심사비 지출시, 장소, 시간, 목적 등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참석자 기본신상명세서(이름, 주소, 연락처 등)를 첨부하여 제출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동의서의 수령 및 정산 시 필첨.)</p>	구분기준		지급금액/기준	비고	A: 건수	B: 난이도	50건 이상	상대적으로 높은 난이도의 평가	300,000원/2시간 *전문가 등급 무관	· 2시간 초과~5시간 미만: 2시간 기준의 150% 지급	50건 이하	상대적으로 낮은 난이도의 평가	200,000원/2시간 *전문가 등급 무관	· 5시간 이상: 2시간 기준의 200% 지급
구분기준		지급금액/기준	비고													
A: 건수	B: 난이도															
50건 이상	상대적으로 높은 난이도의 평가	300,000원/2시간 *전문가 등급 무관	· 2시간 초과~5시간 미만: 2시간 기준의 150% 지급													
50건 이하	상대적으로 낮은 난이도의 평가	200,000원/2시간 *전문가 등급 무관	· 5시간 이상: 2시간 기준의 200% 지급													
		<p>○ <b>편곡료</b> ※ 내부 참여인력 활용 불가</p> <p>- 편곡료 활용 시, 편곡자 프로필과 함께 해당 곡 악보를 반드시 교육진흥원과 공유</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지급기준</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1등급</td> <td>500,000원/곡</td> <td>* 30마디 이하의 곡, 편곡료에서 50% 차감 지급</td> </tr> <tr> <td>2등급</td> <td>400,000원/곡</td> <td>* 80마디 이상의 곡, 편곡료에서 50% 추가 지급</td> </tr> <tr> <td>3등급</td> <td>300,000원/곡</td> <td>* 재편곡, 재편성, 재구성의 경우 원 편곡의 1/2 만 지급</td> </tr> </tbody> </table> <p>* 작곡의 경우 전문가 수수료규정과 관계없이 사안에 따라 별도의 기안을 득한 후 집행</p> <p>* 감수료의 경우, 등급과 무관하게 곡당 50,000원을 지급하되 총액이 500,000원을 초과할 경우 최대 500,000원을 지급함</p> <p><b>&lt;편곡료 전문가 등급 기준&gt;</b></p> <p><b>1등급</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외 국립 교향악단 급 이상의 오케스트라 편곡 경력 및 클래식 음악가로서 국내에 상당한 인지도가 있는 15년 이상 경력의 작곡가</li> <li>· 기타 상기에 준하는 능력이 있는 15년 이상 경력의 작곡가로서 특별히 원장이 인정하는 자</li> </ul> <p><b>2등급</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 시·구립 오케스트라 편곡 경력이 10년 이상 있는 자</li> <li>· 기타 상기에 준하는 능력이 있는 10년 이상 경력의 작곡가로서 특별히 원장이 인정하는 자</li> </ul> <p><b>3등급</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 음악대학, 민간 오케스트라 등 편곡 경력이 5년 이상 있는 자</li> <li>· 기타 상기에 준하는 능력이 있는 5년 이상 경력의 작곡가로서 특별히 원장이 인정하는 자</li> </ul>	구분	지급기준	비고	1등급	500,000원/곡	* 30마디 이하의 곡, 편곡료에서 50% 차감 지급	2등급	400,000원/곡	* 80마디 이상의 곡, 편곡료에서 50% 추가 지급	3등급	300,000원/곡	* 재편곡, 재편성, 재구성의 경우 원 편곡의 1/2 만 지급		
구분	지급기준	비고														
1등급	500,000원/곡	* 30마디 이하의 곡, 편곡료에서 50% 차감 지급														
2등급	400,000원/곡	* 80마디 이상의 곡, 편곡료에서 50% 추가 지급														
3등급	300,000원/곡	* 재편곡, 재편성, 재구성의 경우 원 편곡의 1/2 만 지급														

세목	항목	편성기준						
		[전문가 등급 기준]						
		1등급	2등급	3등급				
		.전·현직 장/차관급 .전·현직 대학총장/학장급 .교장 이상의 교육공무원 .정부 출연기관 선임연구원 이상 .전문직 종사자로 경력 및 지명도가 1등급 예우가 필요한 경우(변호사, 회계사, 의사, 작가, 예술인, 연예인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전문가	.전·현직 4급 이상 공무원(단, 유관부처 제외) .대학부교수급 이상 .10년 이상 경력의 교육공무원 .정부 출연기관 및 문화예술계 관련 기관/단체 5년 이상 재직자 .전문직 종사자 중 1등급 전문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전문가	.전·현직 5급 이하 공무원(단, 유관부처 제외) .대학 전임강사 이상 .10년 미만 경력의 교육공무원 .정부 출연기관 및 문화예술계 관련 기관/단체 5년 미만 재직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전문가				
일반 수용비	교육 재료비	○ 교육 재료비(교육재료 구입, 교재 제작 및 구입, 연습복 구입 등) - 교육에 활용하는 재료(소모품), 교재 제작비 및 구입비 ※ 도서의 경우, 구입목록 작성하여 정산보고 시 자료제출 - 제작 의상이 아닌, 연습복의 경우 일반수용비 내 구매 가능						
일반 수용비	체험 학습비	○ 본 사업과 관련된 공연 및 전시 관람료 등 ※ 공연 및 전시 관람료는 1인당 3만원 이내로 제한하며, 단체 및 기관의 자체 공연을 관람할 경우에는 관람료 책정 불가 ※ 체험학습의 경우, 총 회차 대비 최대 10% 이내 활용 가능 예. 총 20회차 프로그램의 경우, 최대 2회 활용 가능						
일반 수용비	기타 진행비	○ 기타진행비 - 워크숍, 세미나, 포럼, 자문회의 등 행사진행시 소규모적으로 발생하는 물품의 구입(사무용품, 소모품 구입, 현장주차비) ※ 현실을 반영한 적절한 금액으로 집행하되, 비교견적 등을 통한 예산 절감 노력 필요						
일반 수용비	인쇄비	○ 인쇄비 - 교육 및 회의 자료 등 사업 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 제작비 ※ 단순 인쇄가 아닌 구성·디자인·기획이 들어가는 '결과자료집'의 경우 '일반용역비' 내 편성 ※ 인쇄물중 디자인이 삽입되는 경우(홍보 브로슈어 등)는 artwork 비용으로 전체 인쇄비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며, 편집디자인의 경우 전체 인쇄비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 경인쇄(마스타), 옵셋, 복사.제본을 구분하여 표기하며 page와 권당 단가 표기 ※ 산출기준 예시: [복사.제본]40원×100page×100부=400,000원 ※ 세부 내용 조달청 기준 참고 ※ 현실을 반영한 적절한 금액으로 집행하되, 비교견적 등을 통한 예산 절감 노력 필요						
일반 수용비	정기 통학 차량 이용비	○ 정기 통학 차량(택시 / 콜벤) 이용비 - 지리적 여건으로 정기통학 버스 운영이 어려운 경우 택시, 콜벤회사와 계약을 통해 비용을 지급할 수 있으나 사전에 교육진흥원 담당자 확인이 필요하며, 아동 안전관리 계획 제출 및 관리 철저						
일반 수용비	홍보비	- 사업 관련 홍보물 제작비, 홍보 관련 비용(공고료, 광고료 등)						
일반 수용비	회계검사 수수료	○ 회계검사 수수료(*부가가치세 포함) ※ 필수 편성 <table border="1" style="width:100%; text-align:center;"> <thead> <tr> <th>사업비</th> <th>수수료</th> </tr> </thead> <tbody> <tr> <td>1억원이상 2억원미만</td> <td>1,100,000원</td> </tr> </tbody> </table>			사업비	수수료	1억원이상 2억원미만	1,100,000원
사업비	수수료							
1억원이상 2억원미만	1,100,000원							
일반 용역비	공연 제작비	○ 무대, 조명, 음향, 의상, 분장, 소품 등 ※ 공연 성격 상 대여가 필요한 경우, 임차료 편성 가능						
	영상 제작비	○ 공연 영상(전체/하이라이트)						
· 행사 대행업체 용역, 디자인 용역, 영상물 제작 용역(DVD 추가 제작 등 단순 복제작업 제외), 홍보								

세목	항목	편성기준																																																																																																														
		(프로모션) 대행업체 용역, 구매(제작용역) 등 ※ 2백만원 초과 구매 시 비교 견적을 시행하고, 5백만원 초과일 경우 계약서 작성 필요 ※ 2천만원 이하 수의계약 시행, 2천만원 초과 입찰 시행																																																																																																														
임차료	장소대관	- 교육 공간의 경우, 자체 보유 공간을 활용하여 진행 ※ 신청 기관·단체 혹은 참여인력 보유 공간에 대한 임차료 책정 불가																																																																																																														
	차량임차	- 공연장의 경우, 지역 축제·공연장 협력을 권장하며, 필요 시 대관비 책정 가능 - 실비적용. 가급적 참여자 모집 지역, 이동 동선 고려한 교육 공간을 활용해야하며, 부득이 차량 임차 필요한 경우, 임차비 책정 가능																																																																																																														
	기자재 임차	- 교육 진행을 위한 설비(전신거울, 음향, 댄스플로어 등)를 갖춘 공간으로 확보되어야하며, 부득이 일부 설비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임차 진행 가능 ※ 반드시 견적서를 첨부하여 진행해야 하고, 총 2백만원이 넘을 경우에는 비교견적을 실시하여 집행하며, 5백만원이 넘을 경우 해당 업체와 계약서를 작성해야 함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공요금 및 제세	○ 공공요금 및 우편물 발송비 등 - 워크숍, 세미나, 포럼, 자문회의 등 행사진행 시 소규모적으로 발생하는 우편료, 택배 발송, 킷서비스, 대량 문자발송료 등																																																																																																														
		○ 보험료 - 본 사업 관련 교육/공연 추진 시 필요한 부분에 한하여 책정 가능																																																																																																														
국내 여비	강사 전문가 교통비	○ 참여인력 및 전문가 교통비 - 상시 참여인력(무용감독, 창작/교육인력, 코디네이터)이 사업 관련 교육현장 방문 시 책정 - 특강강사, 객원무용수 등 전문가의 교육현장(공연 포함) 방문 시 책정 - 타 지역(시·군)에서 이동하는 경우에 한하여 책정할 수 있음 - 강사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 교육장소 간 거리 기준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30-100km</th> <th colspan="2">101-200km</th> <th colspan="2">201-300km</th> <th colspan="2">301-400km</th> </tr> <tr> <th>왕복거리</th> <th>금액</th> <th>왕복거리</th> <th>금액</th> <th>왕복거리</th> <th>금액</th> <th>왕복거리</th> <th>금액</th> </tr> </thead> <tbody> <tr> <td>30-40</td> <td>8,000</td> <td>101-120</td> <td>13,000</td> <td>201-220</td> <td>25,000</td> <td>301-320</td> <td>45,000</td> </tr> <tr> <td>41-60</td> <td>9,000</td> <td>121-140</td> <td>15,000</td> <td>221-240</td> <td>29,000</td> <td>321-340</td> <td>49,000</td> </tr> <tr> <td>61-80</td> <td>10,000</td> <td>141-160</td> <td>17,000</td> <td>241-260</td> <td>33,000</td> <td>341-360</td> <td>53,000</td> </tr> <tr> <td>81-100</td> <td>11,000</td> <td>161-180</td> <td>19,000</td> <td>261-280</td> <td>37,000</td> <td>361-380</td> <td>57,000</td> </tr> <tr> <td>-</td> <td>-</td> <td>181-200</td> <td>21,000</td> <td>281-300</td> <td>41,000</td> <td>381-400</td> <td>61,000</td> </tr> <tr> <th colspan="2">401-500km</th> <th colspan="2">501-600km</th> <th colspan="2">601-700km</th> <th colspan="2">701km 이상</th> </tr> <tr> <th>왕복거리</th> <th>금액</th> <th>왕복거리</th> <th>금액</th> <th>왕복거리</th> <th>금액</th> <th>왕복거리</th> <th>금액</th> </tr> <tr> <td>401-420</td> <td>65,000</td> <td>501-520</td> <td>85,000</td> <td>601-620</td> <td>105,000</td> <td>701-</td> <td>125,000</td> </tr> <tr> <td>421-440</td> <td>69,000</td> <td>521-540</td> <td>89,000</td> <td>621-640</td> <td>109,000</td> <td></td> <td></td> </tr> <tr> <td>441-460</td> <td>73,000</td> <td>541-560</td> <td>93,000</td> <td>641-660</td> <td>113,000</td> <td></td> <td></td> </tr> <tr> <td>461-480</td> <td>77,000</td> <td>561-580</td> <td>97,000</td> <td>661-680</td> <td>117,000</td> <td></td> <td></td> </tr> <tr> <td>481-500</td> <td>81,000</td> <td>581-600</td> <td>101,000</td> <td>681-700</td> <td>121,000</td> <td></td> <td></td> </tr> </tbody> </table> <p>※ 인터넷 포털사이트 지도검색 활용 거리계산 ※ 강사 거주지와 교육장소 간의 왕복거리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등 지급 ※ 단, 왕복 30km 미만 지역의 경우 지급 불가 ※ 30km이상이라도 같은 시·군·구 내에서는 지급 하지 않음 ※ 서울-제주는 항공비 실비 지급 및 제주공항-교육장소 간 거리 계산하여 지급 ※ 거리 기준에 따른 교통보조금 지급의 경우 별도 증빙자료 제출 없음 ※ 기관(단체) 내규에 따른 집행 가능(대중교통비에 준하여 집행 등) ☞ 가급적 지역에서 활동하는 교육강사를 활용하여 예산의 효율적 사용 ※ 사업 성격상 강사교통비를 다른 세목에 편성하여 집행해야 하는 경우 상기 기준을 준용하여 예산책정 가능</p>	30-100km		101-200km		201-300km		301-400km		왕복거리	금액	왕복거리	금액	왕복거리	금액	왕복거리	금액	30-40	8,000	101-120	13,000	201-220	25,000	301-320	45,000	41-60	9,000	121-140	15,000	221-240	29,000	321-340	49,000	61-80	10,000	141-160	17,000	241-260	33,000	341-360	53,000	81-100	11,000	161-180	19,000	261-280	37,000	361-380	57,000	-	-	181-200	21,000	281-300	41,000	381-400	61,000	401-500km		501-600km		601-700km		701km 이상		왕복거리	금액	왕복거리	금액	왕복거리	금액	왕복거리	금액	401-420	65,000	501-520	85,000	601-620	105,000	701-	125,000	421-440	69,000	521-540	89,000	621-640	109,000			441-460	73,000	541-560	93,000	641-660	113,000			461-480	77,000	561-580	97,000	661-680	117,000			481-500	81,000	581-600	101,000	681-700	121,000
30-100km		101-200km		201-300km		301-400km																																																																																																										
왕복거리	금액	왕복거리	금액	왕복거리	금액	왕복거리	금액																																																																																																									
30-40	8,000	101-120	13,000	201-220	25,000	301-320	45,000																																																																																																									
41-60	9,000	121-140	15,000	221-240	29,000	321-340	49,000																																																																																																									
61-80	10,000	141-160	17,000	241-260	33,000	341-360	53,000																																																																																																									
81-100	11,000	161-180	19,000	261-280	37,000	361-380	57,000																																																																																																									
-	-	181-200	21,000	281-300	41,000	381-400	61,000																																																																																																									
401-500km		501-600km		601-700km		701km 이상																																																																																																										
왕복거리	금액	왕복거리	금액	왕복거리	금액	왕복거리	금액																																																																																																									
401-420	65,000	501-520	85,000	601-620	105,000	701-	125,000																																																																																																									
421-440	69,000	521-540	89,000	621-640	109,000																																																																																																											
441-460	73,000	541-560	93,000	641-660	113,000																																																																																																											
461-480	77,000	561-580	97,000	661-680	117,000																																																																																																											
481-500	81,000	581-600	101,000	681-700	121,000																																																																																																											
	출장비	○ 출장 경비 지급 기준 ※ 물품(수업재료, 다과 등) 구입을 위한 단순 외출은 출장 불인정 ※ 제주의 경우, 내륙지역 출장 시 항공료 실비 지급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여비</th> <th>지급방법</th> <th>지급액</th> </tr> </thead> <tbody> <tr> <td>시외 출장</td> <td>교통비</td> <td>실비</td> <td>대중교통비 지급 부득이 개인차량 이용 시 출장거리 계산에 따름</td> </tr> </tbody> </table>	구분	여비	지급방법	지급액	시외 출장	교통비	실비	대중교통비 지급 부득이 개인차량 이용 시 출장거리 계산에 따름																																																																																																						
구분	여비	지급방법	지급액																																																																																																													
시외 출장	교통비	실비	대중교통비 지급 부득이 개인차량 이용 시 출장거리 계산에 따름																																																																																																													

세목	항목	편성기준			
		구분	여비	지급방법	지급액
					* 하단 [차량유류비 지원 기준] 참조
		일비	정액		. 2만원
		식비	정액		. 2만원 * 2식 이하 제공 시 1/2 삭감 / 3식 제공 시 미지급
	시내 출장	여비	정액 (반경1km 이상)		. 4시간 미만: 1만원 / 4시간 이상: 2만원
		<p>○ 차량 유류비</p> <p>- 개인차량 이용 시 유류비 지급기준으로 계산하며, 보조사업비 카드를 사용하여 집행하거나, 개인 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는 영수증 증빙 후 해당 금액을 사용자에게 계좌이체</p> <p>※ 기관(단체) 내규에 따른 집행 가능(대중교통비에 준하여 집행 등)</p> <p>- 유류비 지급기준: 출장거리(Km)×유가÷연비</p>			
		구분	산출방법		비고
	출장 거리		출발지와 출장지간 거리, 경유지가 있는 경우 경유지를 포함하여 거리 계산		출발지와 출장지간 거리는 한국도로공사*나 민간에서 제공하는 거리방법 활용 *한국도로공사: www.roadplus.com
	유가		출장신청서 결재 상신일 기준 유가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에 고시된 출장신청서 결재 상신일의 유가(휘발유 차량은 보통휘발유, 경유 차량은 자동차용 경유, LPG차량은 자동차용 부탄)를 적용 *유가정보서비스: www.opinet.co.kr
	연비	구분	휘발유 차량	경유 차량	LPG 차량
		연비(km/l)	13.30	14.30	9.77
		*「공무원보수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67호) 적용 * 평균차령('08년)을 고려하여 '10연식 차량의 평균연비(에너지관리공단 통계) 적용 * 위 표에 업는 차량(전기차·수소차 등)은 LPG 차량의 연료비 금액을 준용하여 지급			
사업 추진비	참여자 간식비	<p>- 프로그램 운영 시 집행</p> <p>- <b>참여자 간식비 기준단가: 5,000원 / 1인 1회 기준</b></p>			
	회의식비	<p>○ 회의식비</p> <p>- 참여인력 회의 및 워크숍, 교육프로그램 현장학습 및 공연(결과공유회) 등 장시간 진행에 따라 소요되는 식사 경비</p> <p>- <b>다과비 기준단가: 5,000원 / 1인 1회 기준</b></p> <p>- <b>식비 기준단가: 25,000원 / 1인 1식 기준</b></p> <p>※ 다과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회의식비 1인 30,000원까지 집행 가능</p> <p>※ 종이컵, 휴지, 물티슈, 접시, 비닐봉투 등 일회용품은 일반수용비 세목으로 집행</p> <p>※ 회의 식비의 경우 점심시간(12:00) 및 저녁시간(18:00)에 인접하여 일정이 끝나거나 일정에 포함되는 경우에만 집행 가능</p> <p>※ 본예산은 1인 한도액을 말하는 것이며 예산 절감을 위해 노력하여주시기 바랍니다</p>			

※ 위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에 나와 있지 않은 항목의 경우, 상위보조사업자인 교육진흥원의 규정에 따름



**[첨부5] 2023년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예술활동 지원사업 취약계층 범위**

구분	비고	증빙서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	차상위본인부담경감증명서
조손 가정의 자녀	-	가족관계증명서
다문화 가정의 자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 및 제14조의2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증
한부모 가족 보호대상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한부모가족증명서
장애인 또는 그 자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자녀	장애인 증명서
다자녀 가정의 자녀	다자녀 가정(3자녀 이상)	가족관계증명서
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 2)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제2호의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아동복지시설 재원자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	재원확인 증명서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자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서
특수교육대상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3호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통지서
소년·소녀 가장	-	가족관계증명서
도서벽지 거주자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	재학증명서
학교장 추천자	-	학교장 추천서 및 객관적 증빙자료
자치단체장 추천자	-	자치단체장 추천서 및 객관적 증빙자료
인구감소지역 거주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	인구감소지역(특별시 제외) 거주 확인